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전홍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1. 서 언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를 발표시킴으로써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관계개선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5월 7일에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경제와 사회·문화 각각 1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9월 17일에는 「기본합의서」의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부속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국면은 핵문제의 돌출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 양측의 제도정비도 중단되어 남북경제 교류·협력(이하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발표하고 1992년 4월 헌법개정시 외국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0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94년 11월까지 20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실현될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규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의 기본 틀을 살펴보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한의 법제도를 분석한 다음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기본합의서」의 남북경제협정도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경제협정의 기본원칙을 이행·준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정의 기본 틀은 「부속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

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증과 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⑩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⑪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⑫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경제협정방식은 과거 사회주의 국

가간의 경제교류·협력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과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물자교류의 경우에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불자교류의 대체적인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다음 불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불자교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후 물자교류 거래계약에 따라 물자의 반입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면 지정된 청산결제은행에 통보하여 물자를 반출한 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해 지정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반출대금을 지급받고 물자를 반입한 자는 지정청산결제은행에 반입대금을 지급되 남과 북 쌍방의 청산결제은행은 거래내역만을 해당 계좌에 기입하고 일정기간(통상 1년)이 지난 후에 일괄 청산결제하게 된다. 반출입물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국간 합의한 분쟁조정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사업의 대상과 형식을 정한 다음 사업의 규모 등 기타 실무적 문제는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면 된다.¹⁾

그러나 당분간 「기본합의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제도가 이행·준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도 이러한 인식 하에 우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정부간의 공식적인 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경협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개별기업과의 경험추진 의사만 있다면 남한기업들은 「남북경협 활성화 및 후속조치」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 북한측의 외국인투자절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 활성화에 필수적인 자금이동,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특허권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당국간 대화재개가 급선무인 것은 물론이다.

III.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체계

1.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북한이 남북경협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동사업에도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²⁾ 북한은 중국이 1979년

1) 「기본합의서」의 틀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이 협력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하였으며 자금의 이동,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특허권 보호 등도 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사전에 마련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2)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외국투자관련 법규를 남한기업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남한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에 자극받아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제정하고 1985년에는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을 제정하는 등 6개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의 현행 외국인투자법제는 1992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대폭 개편된 것으로서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제 보다 법령의 숫자나 그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지금까지 제정·정비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은 과거의 6개 보다 훨씬 많은 20개에 달하며 앞으로 새로운 법령의 추가 제정·정비가 예상된다.

또한 개편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여 동 지역내에서는 보다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단독투자(100% 외국인기업)를 허용하였으며, 중국·베트남 등과의 투자유치경쟁을 의식하여 소득세율, 소득세 감면기간 등의 결정에 있어 조세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경영활동 등에 대한 규정의 구체성을 제고하였다. 북한은 현행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아시아 및 동구 여러나라들의 법제를 참고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지난 1984년의 「합영법」이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모델로 한 것처럼 대체로 중국의 관련 법제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³⁾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체제는 우선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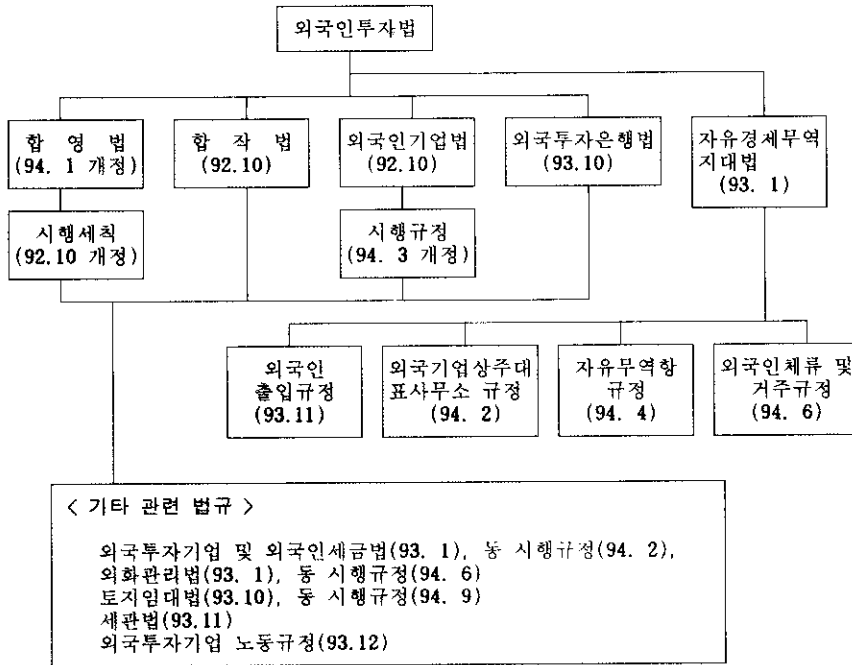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투자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비은행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형태에 따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형태에 대해 「외국투자은행법」을 하위법으로 하는 중심법률과 특별법 성격을 가진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무역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그리고 기타 관계 법규(「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세관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삼자기업(三資企業) 체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삼자기업 외에 자원의 공동개발(Joint Exploration)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련법제를 모방한 베트남도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건설경영이전계약(Build-Operation-Transfer) 등의 특수한 형태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북한은 자원개발이나 사회

3) 중국이 외자기업을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외국인독자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체계 및 내용도 유사하다. 또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등 대부분의 관련 법규가 중국의 해당 법규와 유사하다.

연구논단

<그림 1>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



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별도의 조직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⁴⁾

북한의 합영기업(equity joint venture)은 우리가 보통 합작투자라고 부르는 지분참여형 합작투자기업으로서 투자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윤과 손실의 분배에 따르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은 일종의 생산분여(production sharing) 또는 기술공여계약에 의한 투자기

업으로서 합작계약의 조건과 형식, 출자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출자지분의 개념이 없고 이윤분배, 투자회수, 해산시 재산 귀속 등은 계약에 의해 정한다. 북한의 합작기업은 투자는 공동으로 하되 생산·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도록 하여 외국측의 경영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합작기업과 차이가 있다.⁵⁾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조직구성이나 경영, 투자 이윤

4)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을 장려부문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국, 베트남에서는 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부문이 크게 보아 합작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합작법」은 이 부문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합영법」에는 채취공업, 건설, 운수 등이 대상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5)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의 경영은 계약에 따라 ①이사회 ②공동관리위원회 ③제3자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측에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교역 및 투자안내」(서울: 한국무역협회, 1994), pp. 233~241.

회수 등에 있어 융통성을 갖고 있어 외국측은 단기적인 경제상황과 투자여건에 맞출 수 있고 중국측은 자본출자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방 초기단계에 합작기업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많았다. 특히 서비스부문이나 자원합작개발 등은 합작기업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합작경영기업에 비해 건당 투자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외국인기업은 외국측이 100%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설립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법의 섭외경제적 성격

외국인직접투자는 어느 한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개인·법인·국가 및 기타 경제조직 상호간의 경제관계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국제경제법의 범위에 속하는 섭외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외국인투자법제에서는 국제경제법상 국가주권존중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⁶⁾ 여기서 주권이라 함은 속인적관할권과 속지적관할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나

라에 따라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섭외경제법으로서의 외국인투자법제에서 관할권의 문제로서 발생하는 것은 이를테면 속인주의적 관할권을 우선으로 할 경우 합병이나 합작투자의 양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동시에 이중과세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외국투자를 받아들인 현지국가의 주권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산의 국유화나 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투자법률의 섭외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고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보장과 보호의 규정을 두게 된다.

(1) 원본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

투자형태와 관련법규(특히 외환관계법)에 따라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북한도 중국,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률에서 투자원본의 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환부족 때문에 거래계좌를 북한원화계좌('조선원돈자리')와 외화로 바꾼 북한원화계좌('외화원돈자리'), 외환계좌('외화돈자리')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북한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북한원은 '조선원돈자리'에 입금시키되 이 계좌의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소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원본회수 및 과실송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

6) 국제경제법상 국가주권존중의 원칙의 근거로서 일례를 들면 UN총회에서 통과된 「자연자원 및 영구주권에 관한 결의」, 「각국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등을 들 수 있다.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서울: 평민사 1992), p.17.

인이다.⁷⁾

(2) 내국민대우의 보장

내국민대우는 좁은 의미에서는 외국투자 가들에 대해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보호와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외국투자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실질적 내국민대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자에 대하여 별다른 특혜나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미국, 캐나다와 일부 서구국가에서는 외국투자자가 넓은 의미의 내국민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장적 정책과 규제를 병행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을 명문화하는 좁은의미의 내국민대우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적용과 실질경영활동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투자자와 그 재산에 대한 사법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받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이라는 좁은 의미의

내국민대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분야의 제한, 차별적인 과세, 상품구매 및 판매 등 시장접근의 제한,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을 들으로써 내 국민대우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⁸⁾

(3) 수용 또는 국유화에 대한 보상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외국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 또는 수용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의 국유화 또는 수용시 '해당한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였다.⁹⁾

국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전쟁, 정치적 동란, 내전 등의 특별한 경우를 말하며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국제기준이다. 중국의 경우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표현이 있으며 또한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에 이러한 세 가지 보상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¹⁰⁾

북한의 경우 단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

7)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7조는 '외국투자자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 영역밖으로 재금없이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16조는 '조선원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환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외화소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한국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37조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9)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19조,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집」 (서울: 통일원, 1994. 9), p.6.

10) 일례로 한국과 체결한 투자보호협정 제 5조 및 제 6조가 있다. 주중국한국대사관, 「중국투자안내」 (북경: 주중국한국대사관, 1993), pp.263~265.

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외국인투자법 제19조)는 규정이 있을 뿐 현재까지 외국과 별도의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투자시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보상조항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4) 분쟁해결의 보장

투자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그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우호적 협의, 국내중재기구에 대한 중재신청, 국제중재의 세 가지 방식이 보편적이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보편적 해결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¹¹⁾ 북한의 경우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북한재판기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중재받을 수 있으나 북한의 사법제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분쟁해결을 제3국 또는 국제중재기구에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에 분쟁해결방식을 명기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기구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965년 설립되어 1987년 현재 97개 국가가 가맹되어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 보다는 대외경제부서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며 얼마 안되는 제3국 중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투자의 경우 투자계약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드시 거쳐 계약조항들을 치밀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한 분쟁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투자보장장치

위에서 살펴 본 투자원본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 내국민대우, 수용 또는 국유화에 대한 보장, 분쟁해결의 보장, 산업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해외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법으로서 쌍무적 투자보장협정, 투자보험·보증협정,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약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의 정치적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일명 독일식 투자보장협정이라고 하

11) 북한의 외국인투자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합영기업에 대한 법)에서는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합작법」(합작기업에 대한 법)과 「외국인기업법」(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에 대한 법)에서는 북한의 중재기관과 재판기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한 제3국 중재여부는 불확실하다.

는데 1991년 현재 OECD 국가는 물론 75개 개발도상국가가 상호적으로 약 253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 있다.¹²⁾

투자보험·보증협정은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미국의 해외민간투자회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위험을 보증하고 위험발생시 투자기업에 직접 보상해 준 다음 자본도입국(host country)과의 협상 또는 국제중재·재판을 통해 자본도입국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자보험·보증협정은 미국식 투자보증협정으로 불리우고 있다.¹³⁾ 한편 국제적 투자보장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체제로서 1976년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가 1992년에 작성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일반지침」(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등이 있다.

중국이 1991년말까지 27개 국가와 쌍무적 투자보증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28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데 비해 북한은 현재 어느 나라와도 투자보증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투자촉진과 투자보장 및 분쟁중재를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투자보호와 과실송금, 국유화·수용에 대한 보상, 분쟁해결, 최혜국대우 등 제반 투자보장을 단지 외국인투자법률에서 천명하는 정도의 일방적 투자보장에 그치고 있다.¹⁴⁾ 따라서 대북투자계약서 상에 투자보장 관련조항을 명기함으로써 투자보장의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는 남국관계개선에 따라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투자보장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국간 투자보장이 어려울 경우 미수교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감안하여 정부대신 형식적으로 민간기구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V.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 내용

1. 투자주체의 범위

북한은 외국측 투자주체의 정의를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12) World Bank Group, *Legal Framework for the Treatment of FDI*, Vol.1, (Washington D.C.: World Bank, 1992), p.8.

13) 전홍택·조봉호, “남북한 투자협력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편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 pp.25~28.

14) 투자보장상치는 ①일방적 보장 ②계약에 의한 보장 ③국가간 쌍무적 보장 ④다자간 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교포들도 투자주체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⁵⁾ 중국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대만교포, 홍콩 및 마카오교포, 기타 화교(이들을 통칭 삼포(三胞)라 함)에 대하여 특별우대법을 전국적 차원에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차원에서도 삼포에 관한 별도의 우대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삼포에 대한 특별우대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나 개방 초기에는 삼포투자우대가 상당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였다.¹⁶⁾ 1979~91년간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삼포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93.4%, 계약액 기준으로 85.7%에 달하며 화교자본이 외국인투자의 중심이 되어 온 데에는 삼포 특히 대만동포에 대한 특별우대조치가 기여한 바 적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교포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투자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교포가 베트남 경제조직에 대해 자본을 출자하여 베트남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외국측과 합작경영을 할 경우에 이들은 베트남 개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에서 “재일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법에 근거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이는 친북한 교포(특히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규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제5조), 「합영법」(제2조), 「합작법」(제5조), 「외국인기업법」(제6조), 「외국투자은행법」(제7조)은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투자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석에 따라서는 한국기업 및 개인의 투자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던 사실이나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대

<표 1> 중국의 삼포투자 우대법규

중 앙	대만교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규	83. 4 「대만동포의 경제특구투자에 대한 특별우대법」 88. 7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
	외자기업법규중 삼포에 대해 적용되는 것	84.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수출입화물의 감독과 징면세에 관한 규정」 85. 4 「화교투자장려에 대한 집행규정 동시」 86.10 「외상투자장려규정」
지 방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총 88개의 삼포우대 또는 대만동포우대 법률,규정, 조례	

15)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에서도 재외교포를 투자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16) Margaret Pearson, *Joint Ventur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북투자 요청 발언을 감안할 때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허용시 외국인투자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합영법」(제7조)에서는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고 규정하여 중국의 대만동포 또는 삼포우대와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¹⁷⁾

2. 투자 절차

북한의 합영법은 정무원의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역담당국이 합영기업 창설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승인가부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세칙에서는 승인처리기간을 사전협의단계¹⁸⁾(20일)와 승인단계(30일)로 세분하고 있다. 북한의 합영기업 설립승인처리기간(50일)은 중국이나 베트남(3개월) 보다 매우 짧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별도의 영업허가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북한이 더 길 수도 있다. 즉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합영사업승인을 받고 나면 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게 되나 북한의 경우 등록절차와 영업허가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등록절차와는 별도로 합영사업 승인후

60일 이내에 자기 출자 몫의 5% 이상은, 그리고 합영사업 승인후 12개월 이내에 출자총액규모에 따라 출자총액의 40~70%를 출자하여야만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합영법시행세칙 제21조). 여기서 출자총액이 투자총액을 의미하는지 등록자본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외국인투자법제를 참고하여 보면 투자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에 차입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업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총계에 해당하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설립시 출자자가 불입한 자금총액으로 등기관리기구에 등록된 자본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투자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등록자본금은 전부 납입해야 하며, 불입기간은 투자계약·정관 등에서 규정한다. 일괄 납입의 경우 영업허가증 발급 후 6개월 내에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분할 납입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증발급후 3개월 이내에 출자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제 1기 납입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당초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에 관해 명시적인 규제가 없었으나 1986년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잠정규정」을 제정하

17) 그러나 「합영법시행세칙」 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에 동포들과의 합영에 대한 구체적 우대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8) 「합영법시행세칙」(제12조)에 따르면 예비기술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 기술분헌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경제관계분헌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회, 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 규약 초안은 합영공업총국과 사전협의되어야 한다.

연구논단

<그림 2> 합영기업 설립 절차

절 차			소요기간	비 고		
북한측 투자자	(1) 사전협의	해당 정부기관	20일 이내	협의사항에 따라 재정부, 국가 계획위원회, 합영총국 등		
	(2) 합 의					
	(3) 계 약	외국측 투자자				
	(4) 승인신청					
	(5) 승 인	합영공업총국			1개월 이내	
	(6) 회사등록신청	도 행정 경제위원회			15일 이내	승인후 30일 이내 등록신청
	(7) 등록증 발급					
합 영 기 업	(8) 계약이행 담보출자	양측 투자자	15일 이내	합영승인후 60일내 자기지분의 5% 이상 출자 합영승인후 12개월내 총투자액 의 40~70% 해당 등록자본 출자		
	(9) 영업허가발급 최소출자					
	(10) 영업허가신청	합영공업총국				
	(11) 영업허가증 발급					

여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등록자본의 투자총액에 대한 비율을 규제하게 된 배경은 투자기업이 운영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 또

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을 목적으로 투자총액에 대한 등록자본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그 만큼 투자유치국에 돌아올 투자이익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합영법(제15조)에서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

19) 등록자본의 투자총액에 대한 비율은 투자총액 300만달러 미만은 70%, 300만~1,000만달러 50%, 1,000만~3,000만달러 40%, 3,000만달러 이상은 1/3이다.

연구논단

<표 2> 북한의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지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
경영조직	이사회, 공동경영	북한측이 경영. 다만 비상실 공동협의기구 설치	규정 없음.
출자비율	당사자간 합의 결정	출자지분의 개념 없음	외국인 100%
승인처리 기간	50일내(사전협의단계: 20일, 승인단계: 30일)	50일내	80일내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국내거래는 합영자재상사, 무역기관, 여타 합영·합작 회사를 통해야 함	규정 없음 (외국기자재 수입시 국가승인 필요)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한 (직접거래시 승인 필요)
고용 및 해고	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규정 없음	합영기업과 같음
직업동맹(노조)	직맹의 활동보장, 노동계약 체결	규정 없음	합영기업과 같음
보 험	북한보험을 원칙으로 함	규정 없음	합영기업과 같음
소득세	25%(자유경제무역지대 14%). 이윤발생후 3년 면세. 연장가능	법이 정한데 따라 (합영기업과 같을 것으로 추측)	14%. 이윤발생후 3년 면제 2년 연장가능 (50% 감면)
관 세	수입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관세 면제
기타조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좌 동	좌 동
감 사	허용 안됨	규정 없음	허용 안됨
분쟁해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도 가능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작기업과 같음
회계, 세무감독	재정검열원, 재정기관	재정은행기관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동 시행세칙 제 21조도 투자규모에 따른 등록자금의 투자총액에 대한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자금의 투자총액에 대한 최소비율을 규정하고(시행세칙 제21조) 있으며 합영기업이 합영사업 승인후 12개월 안에 등록자본을 전액 납입하여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합영법 시행세칙(개정 1992.10.16) 보다 늦게 최근에 제정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 3.27)의 투자절차와도 부합된다. 동 시행규정에서는 등록자본의 규모를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일정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한편 출자에 있어서 북한측은 주로 토지, 건물 등 현물로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방초기 중국측 투자자는 자기측 출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물출자를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측의 지적재산권(발명권, 기술문헌 등) 투자에 대한 평가도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이 평가하는데 따르도록 되어 있어(시행세칙 제30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제3자에게 평가를 위임할 것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²¹⁾

합작기업의 투자절차는 합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과 협의한 후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대외경제기관의 합작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작승인여부는 신청후 50일 안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²²⁾

외국인기업의 투자승인처리기간은 80일인데 합영, 합작기업과 달리 사전협의단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정부 또는 대외경제무역부와 사전협의할 거치는 중국의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안에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후 20일 안에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합영·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같다.

3. 경영활동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합영법시행세칙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이

20) 인관납입의 경우 기업등록증 수령후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분할납입의 경우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등록자본의 15% 이상 되게 하며 나머지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내에 하되 기업등록증 발급후 2년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국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21) 중국은 외국측 지적재산권의 제 3자 평가를 인정하는 한편 중국측 출자물에 대해서는 제 3자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22) 합작승인처리기간 50일 속에 사전협의의 기간이 포함되는지는 합작기업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합영기업과 같은 투자절차가 적용된다고 보면 사전협의단계 20일, 승인단계 30일로 세분될 것이다.

제정되어 있는 반면 합작기업에 대한 시행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 중심으로 경영 활동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합작기업에 대한 경영활동규제는 대체로 합영기업에 준할 것으로 추측된다.

(1) 이사회 조직과 운영

구합영법 및 시행세칙은 이사수, 이사임기, 이사회참가위원 등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방법도 의결정족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 합영법과 시행세칙에서는 3명 이상의 이사수 규정, 이사임기(5년), 결의권의 위임인정, 의결방법을 만장일치사안(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사장, 부사장,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과 2/3 찬성사안(그 밖의 사안)으로 이원화한 점 등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의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조총련계와의 합영사례를 보면 예외적으로 이사장과 사장을 모두 제일조선인 2세가 맡은 적도 있다.²³⁾

(2) 물자구입과 구매

합영회사 및 외국인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내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북한내 구매시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북한내 무역기관, 여타 합영·합작회사 및 그 밖에 북한에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사업망을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합영자재상사를 통한 구입은 그 소요량을 전년도 3/4분기까지 합영자재상사에 제출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합영회사가 북한내에서 사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외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합영기업의 북한내 물자구입시 외화로 지급하게 한 것은 외환수입을 가능한 한 북한측에 이전시키려는 의도로서 국가화폐지급을 인정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보다 엄격한데, 이는 북한의 외환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물자 구입시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도 더욱 많은 외화를 북한기업에 이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규정은 비교적 저렴한 국내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북한물자의 구입 인센티브를 삭감시키고 있다.²⁴⁾

23) 「日朝經濟の接點, 二世の計算」, 『朝日新聞』, 1991年 1月 26日, 宮塚利雄, “北韓의 合營事業과 日本企業”, 『北韓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pp.43~62에서 재인용.

24) 중국은 합영기업의 국내물자조달시 국영기업과 동일한 가격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식탄·석유

합영회사의 생산제품 판매에 대하여 개정 세칙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기본(제5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수판매도 가능(제55조)하다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외국인기업도 수출과 내수판매 모두 가능하다. 또한 눈에 띄는 새로운 규정은 생산제품의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을 날로부터 1년까지는 합영공영총국의 승인을 받아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내수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동초기의 품질문제에서 오는 수출의 애로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대금은 국가승인하에 북한내부 물자구매나 노임, 각종 사용료, 납부금 등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제57조)하여 북한 화폐로 받은 판매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 노무관리

중국의 경우 노무관리와 외환분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북한의 경우 노무관리나 외환분제에 있어서 법률적 규제 뿐 아니라 행정간섭의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의 채용에 있어서 우선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채용하여야 하는데 외국투자기

업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 들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14조). 해고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직업동맹 및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고 1개월 전에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이 제출되어야 한다. 직업동맹은 우리개념의 노동조합보다는 노동당 외곽단체의 성격이 강한 단체로서 외국투자기업은 직업동맹의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시행규정 제62조)은 직업동맹에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²⁵⁾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월 약 100달러인 220원(자유경제부역지대는 월 약 75달러인 16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밖에 가급금·장려금·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합영기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7%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²⁶⁾ 따라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월 15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²⁷⁾ 이와 같이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의 규제가 까다로운데다가 중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에 있

등 6개 물자의 경우에만 국제가격을 적용한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65조).

- 25) ① 종업원 500명까지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자금
 ② 종업원 500명 이상 1,000명까지 임금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③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임금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자금

26)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제41조)에서는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들에게서 받아 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료의 합영기업부담금을 규정한 합영법 시행세칙 제71조와 상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7) 조동호, "북한의 노동력 현황", 「진환기의 북한경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1994), pp.15~17.

어서 인사청탁, 법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해고, 합영파트너가 운영하는 북한 내 타공장 열등인력의 합영공장으로서의 배치 등의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4) 회계처리 및 결산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의 하나는 손익과 직결되는 회계제도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회계제도는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합영법과 동시행세척상의 회계처리에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개정세척에서도 재무표의 종류 및 작성기준, 원가계산,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 등의 방법, 필요경비의 기준과 인정범위, 외환환차손익평가 등에 대한 회계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관리제도로서 1985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및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회계원칙과 기준을 개선하여 왔다. 베트남도 외국인투자법에서 총지출의 5% 이내 경비지출 인정 등 북한에 비해 명확한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된 '재정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국의 회계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결산시 예비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기금은 당해연도 순소득²⁸⁾의 5%를 매년 적립하며(등록자금의

25% 적립시까지), 기타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범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종전과 같으나 개정 합영법시행세척은 기타기금의 적립규모를 당해연도 순소득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기금의 공제시 순소득의 일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납세후 이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그 기준을 납세후 이윤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국투자기업의 분쟁처리와 산업재산권 보호

(1) 분쟁처리절차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회사운영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 실패시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쟁해결의 심의를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정한 합영표준계약서에는 북한내에서의 중재절차만 규정하고 제 3국의 중재기관에 대한 심의규정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시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재기구(예: 스톡홀름 중재기구)를 지정하는

법시행규정(제47조)에서는 예비기금적립은 결산이익의 5%로 규정하고 있는데 합영기업의 경우에도 순소득이라함은 결산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8) 합영법 시행세척보다 늦게 제정된 외국인기업

방법 또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중재절차가 정해지는 경우 그에 따르는 방법 등이 있다.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중재절차를 정하는 경우, 첫째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둘째 북한의 중재기관과 남한의 중재기관이 협정을 통해 중재하도록 하는 방법의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에는 외국인 당사자나 대리인이 회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행정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투자은행법에는 외국인투자법·합영법과 달리 분쟁사건을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외국인기업의 경우 외국인 100% 출자기업이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외국인투자가와 북한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 3국에서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록 해석된다. 그러나 합작기업이나 외국투자은행에 있어서 투자당사자간의 분쟁, 외국인기업과 북한기업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상 제 3국에서의 중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보호문제는 노무관리, 회계제도 등과 더불어 북한의 합영법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영법에는 발

명권, 기술문헌, 기계설비 등의 출자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합영회사가 새롭게 인수한 기술 및 금융시장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 더구나 표준계약서에는 '출자한 생산특허와 기술비밀은 합영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북한측 출자자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 북한의 국내 산업재산권 보호제도를 보면 종전에는 발명 및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오다가 1989년 1월 과학기술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74년 8월 UN 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86년 6월 특허협력조약(PCT) 등 산업재산권관계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을 허용하고 있다.²⁹⁾ 그러나 국제기술도입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업소유권의 이진 또는 허가, 노하우 허가, 기술용역 등의 국제계약과 관련설비의 수입 등에 있어서 비밀유지에 문제가 있다. 국제기술도입계약에 관한 법령미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이 모두 「파리협약」에 가입해 있고 파리협약가입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

29) 우리나라는 WIPO에 1979년 3월, 파리협약에 1980년 5월, PCT에 1984년 5월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서울: 법제처, 1992), pp.252~256.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 국적의 특허나 상표출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³⁰⁾

현재 북한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공업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쌍방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 신설 공업소유권 보호규정이 남한기업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

1993년 1월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투자형태의 구별 없이 모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통일세법으로서 종전의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추가하여 거래세(간접세의 일종으로 일종의 판매세), 재산세, 상속세, 그 밖에 지방세(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등)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한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하여 새로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소 유리한 조세감면혜택을 책정하였다. <표 3>은 북

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의식하여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을 25%로 정하였으며 또한 '지내'에 적용되는 세율도 중국의 특구보다 낮은 14%로 책정하였다. 북한의 기업소득세율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도네시아(15~30%), 말레이시아(40%), 태국(30~50%), 필리핀(15~25%) 등 동남아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수준이다.

조세감면(tax holiday)에 있어서는 북한은 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감면혜택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감면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감면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투자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시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4~2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국외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1년이상 5년미만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세는 북한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에 적용되며,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

30)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파리협약 가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국적인의 특허상표 출원을 허용하지 않다가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1989년부터 우리 국적의 특허상표출원을 받아 주고 있다.

<표 3> 북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비교

	북한	중국	베트남
소득세율	일반지역: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장려부문: 10%	일반: 33%(지방세 3% 포함) 특구: 15% 장려부문: 10%	일반: 25% 수출가공구: 10% 우대부문: 10, 15, 20%
소득세 감면	자유지대제조업, 장려부문: 3년 면제후 2년 50% 감면 ¹⁾ 자유지대서비스업: 1년 면제후 2년 50% 감면 ¹⁾ 자유지대하부구조건설 총 투자액 6천만원 이상: 4년 면제후 3년 50% 감면	기초: 10년이상 운영시 2년 면제후 3년 50% 감면 농림어업: 기초+10년간 10~15% 감면 70% 수출기업: 기초+50% 감면 계속 선진기술기업: 기초+3년 50% 감면 특구의 사회간접자본 15년 이상 기업: 5년 면제후 5년 50% 감면	기초: 1년 면제후 2년 50% 감면 20% 소득세 적용부문: 2년 면제후 3년 50% 감면 15% 소득세 적용부문: 2년 면제후 4년 50% 감면 10% 소득세 적용부문: 4년 면제후 4년 50% 감면
재투자 혜택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액의 50% 환급(하부구조건설은 100%)	5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40% 환급, 첨단기업 및 수출기업은 100% 환급	3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환급
관세 면제	일반지역: 생산용수입 면세 지대: 무관세	일반: 수출용수입 면세 특구: 무관세	일반: 수출용수입 면세 수출가공구: 무관세

주: 1)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며, 따라서 조총련계 북송교포 및 일본인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6. 외환관리법제

북한의 외환관리제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집중관리 및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

업은 무역은행 또는 외환관리기관이 승인한 은행에 외화구좌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모든 외화이용 기관·기업·단체는 분기 및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환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북한 원은 '조선원돈자리'에 넣어야 하며, 이 구좌의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 16조).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결국 외자기업이 소요외화를 수출이나 해외차입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 '원'화 이윤의 과실송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³¹⁾ 외화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취업자는 임금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의 60%까지 송급할 수 있다.³²⁾ 한편 새로 제정된 외화관리법에서 주목되는 조항은 '북한주민은 국가가 정한 기준³³⁾ 안에서는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외화는 북한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외화관리법 제15조)는 부분으로서, 중국의 경우 허용된 개인보유 외환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더 개방적인데 아마도 외화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7. 자유경제무역지대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내용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특구 방식의 수용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1992년 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1993년 1월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를 법제화하였다.³⁴⁾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에서는 '지대(地帶)')는 특혜적인 무역 및 증계수송과 수출, 가공, 금융, 서비스지역으로서 투자자는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대는 투자심의의 지방분권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격결정의 자율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환시장 허용, 특혜적인 조세감면조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투자심의결정에 있어서 지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투자규모에 따라 중앙기관인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방기관인 지대당국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심의결정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⁵⁾ 가격결정에 있어서 지대 안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시장형성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일부 대중필수품

32)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은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중 필요한 부분을 송급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의 60%까지 송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33) 외화와 마술 분 2,000원(약 950달러)에 해당하는 외화(시행규정 제42조).

34) 북한은 1991년 12월 성무원 결정 제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나진·선봉일대의 621km²에 달하는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항, 선봉항 및 동 시대에 인접한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35) 일반부분의 경우 총투자액 1천만원까지, 하부구조건설부분의 경우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는 지대당국이 심의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대외경제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31)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외환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외자기업이 소요외환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수지균형' 의무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비판에 따라 외환조절센터를 통한 조선, 수입대체산업의 경우 내수판매액의 외화결제인정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왔으나 결국 환율현실화 등 외환개혁이 이루어져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의 가격은 국가가 정함).

또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지대 안의 은행은 승인을 받아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세상의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개방의 창구로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외에도 특구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그것을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켜서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체제개혁적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대는 개방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점은 명확하나 체제개혁의 실험장으로서 지대내에서의 시장조절기능 활용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불투명하다.

한편 최초의 지대로 나진·선봉지역을 설정한 의도는, 첫째 동 지역이 수도권지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대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의 통제가 용이하고, 둘째 UNDP가 추진하는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진·선봉지역에서의 외자유치 성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북한의 정치체제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지대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8. 외국인 투자관련 토지제도

외국의 법인과 개인(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포함), 합영·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토지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하되 자유경제 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도 가능하다. 토지이용권³⁶⁾은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으나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국의 경우 토지이용권의 판매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토지판매시 북한당국에 무조건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토지사용에 따른 비용은 크게 임대료와 사용료로 구분되며 이미 개발된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임대료에 토지개발비가 포함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매입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³⁷⁾ 중국의 개방초기에는 토지출

36) 토지이용권은 특정토지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의 지상권(地上權)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용기간동안 제 3자에게 양도, 임대, 지당이 가능하며 이용기간 만료시에는 토지와 함께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원소유권자 또는 소재지정부에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37) 상려부문 또는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의 임대료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아래 5년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연구논단

자에 대한 평가, 임대료산정 등이 불합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토지임대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북한의 경우도 여러가지의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중국이

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제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임대료, 출자평가 등에 빈틈 없는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표 4> 북한, 중국, 베트남의 합영제도 비교

	북한	중국	베트남
출자지분	당사자 합의	외자최저비율 25%	외자최저비율 30%
합영기간	10년, 특정부문 10년이상 가능	10~30년, 특정부문 30년이상 가능	50년, 특정부문 70년까지 가능
승인처리기간	50일	3개월	3개월
출자불입	승인후 15일이내 출자액의 5% 12개월 이내 총투자액의 40~70%에 해당하는 등록자본 전액	일괄불입: 6개월내 등록자본전액 분할불입: 3개월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의 제1회 불입금	설립시 일시에 완납출자 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상당기간후 출자
토지	최고 50년 임대 (양도·상속 가능)	임대기간 최고 40~70년 (양도·상속 가능)	임대기간 최고 50~70년 (양도·상속 가능)
물자구매	국내구입우선, 국내구입시 국제가격기준, 외화지급, 국가계획반영 필요	국내구입우선, 국내구입시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외화 또는 국내화폐 지급	국내구입 우선
판매	수출원칙, 국내판매 승인 필요	수출장려, 수입대체기업 등 국내판매 가능	수출원칙, 국내판매 승인 필요
노동관리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고용·해고 가능, 사회보험료 회사부담	노동계약이 기본, 직접고용 가능, 사회보장·보험료 회사부담	고용알선회사, 직접고용 가능, 사회보장·보험료 회사부담
결산	예비기금으로 순소득의 5% 적립(등록자금 25% 누적까지), 기타기금으로 순소득의 3% 이상	상호합의로 기금적립, 대체로 납세후 이윤의 10% 수준	준비기금으로 납세후 이익 5% 적립(법정자본금 25% 누적까지), 기타기금은 상호 합의

V. 결 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구합영법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크게 개선되었으나 16년의 개방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물론 개방의 역사가 8년에 불과한 베트남에 비해 볼 때 전반적인 법령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비흡한 점이 많다. 이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 데다가 북한이 경제난 타개 및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하여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체제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는 1980년대 전 반까지의 중국의 관계 법제와 비교해 볼 때는 별 손색이 없으며 조세제도 등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의지가 비교적 확고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서방기업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북투자의 성공여부를 실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이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든가 또는 구체성·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경

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치주의의 전통이 약한 후진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령보다는 실제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섭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틈 없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교섭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유리한 투자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북투자는 경제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겠지만 대북투자진출기업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북한당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시장경제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북한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임금, 토지임대료 책정 등 불리한 투자조건을 감수하는 것은 후속 진출업체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해하고 개방을 오히려 지연 또는 실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기반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 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북한당국에게 남북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미비가 경험활성화에 큰 장애라는 것을 지적하여 북한 스스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4.
- 권 율, “베트남의 토지제도와 개발참여방안”,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년 1·2월호.
- 김시중,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자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평민사, 1992.
- 배종렬, 「북한 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정책 방향」, 수은조사월보, 제12권 제3호, 1993. 3.
- , “국대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북한 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제문제」, 서울: 통일원, 1994.
- 법제처, 「북한토지개요」, 1991.
- , 「북한의 합영법제」, 1992.
- 양평섭·안종석,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 전홍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자료 93-05, 한국개발연구원, 1993. 3.
- , “북한의 투자환경과 대북투자전략”,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 , “조동호, “남북한 투자협력의 당면과제”, 제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한국개발연구원, 1992. 6.
-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논총」, 1993.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투자안내」, 북경: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993.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
- 宮塚利雄, “北朝鮮の合作事業と經濟特區”,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91.
- , “北朝鮮における合併事業の展開について”,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92.
- Moser, Michael J.(ed), *Foreign Trade, Investment, and the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Pearson, Margaret M., *Joint Ventur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Shahid, Javed Burki, *Pattern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hina*, World Bank, 1991.
- The 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Laws of Vietnam*, 1992.